

# 2026년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

2026년도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12월 30일

## 창 원 시 장

(단위 : 억 원)

지 원 자 금 종 류	연 간
경 영 안 정 자 금	1,600
시 설 자 금	400

※ 자금소진 여부에 따라 총액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

### 1. 공통사항

#### 가. 지원대상 : 창원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중

-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체
- 사업자등록상 업태가 제조업인 조선사·항공 협력업체
- 원전산업 관련 협력업체(전업종, 추가서류 참조)
- 방산업체 및 방산 부품 생산(납품)기업
- 로봇, AI, 빅데이터 등 4차산업 관련 연구개발업(예시 참조)
- 소프트웨어산업
- 철강·알루미늄·구리 제품 제조기업 및 관련 파생상품 제조기업
-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신청 업체
- 제조관련서비스업(3종)
  - 하수·폐수처리업, 폐기물수집운반업, 폐기물처리업

## 나. 지원제외대상

○ 지방세 체납업체

○ 휴·폐업 중인 업체

○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

(개인은 사업자등록일, 법인은 설립등기일로부터 7년 이내의 창업기업은 적용 제외)

○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(고용노동부 공표일로부터 3년간 지원 제한)

○ 대출 미실행 업체는 승인일로부터 1년 간 신청 제한

○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받고 있는 업체

○ 2년 평균 부채비율 140% 미만 업체(경영안정자금만 적용)

(<sup>①</sup>개인은 사업자등록일, 법인은 설립등기일로부터 7년 이내의 창업기업, <sup>②</sup>원전 산업 관련 협력업체, <sup>③</sup>경영안정자금 1억원 이하 소액신청 기업은 적용 제외)

## 다. 지원내용 : 대출금의 이차보전금 지원

○ 접수기간 : 2026. 1. 2.(금) ~ 자금 소진 시까지

○ 신청접수기관 : 용자취급금융기관 9개소(우리 시와 협약 체결한 은행)

경상남도 내 BNK경남, KB국민, IBK기업, NH농협, iM뱅크(舊 대구), BNK부산, 신한, 우리, KEB하나은행

○ 대출금리 :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

○ 상환방식 : 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1년 분기별 균등상환

○ 이차보전 : 연 2.5%(2년 거치기간), 연 1.5%(1년 분기별 균등 상환기간)

○ 자금용도 : 경영안정자금(대환용도 사용 가능) 및 시설자금

○ 대출실행 기한 : 자금 결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

※ 기한경과 시 실효 및 자금 결정 통보일로부터 1년 간 신청 제한

## 라. 유의사항

- 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용자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 심사를 거쳐야 하며, 은행 여신 규정에 따른 담보 (부동산, 신용 보증) 및 수수료는 업체가 부담
- 용자 결정 통보 후 취급 금융기관 변경 시에는 사전승인 필요
  - ※ 용자 실행 후 취급 금융기관 변경 불가
- 업체명·대표자·소재지 등 변경 시에는 30일 이내 우리 시에 신고하여야 하며,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 시에는 사전 승인 필요
- (경영안정자금) 용자실행일부터 6개월 이내 총 용자금 중 70% 이상을 사용 후, 1개월 이내에 사용내역서 제출
  - ※ 사업계획서 상 제출 내역과 일치하여야 함
- (시설자금) 사업 추진 완료 후, 1개월 이내에 완료보고서 제출
  - ※ 시설설비 투자계획서 상 제출 내역과 일치하여야 함
- 사용내역서<sup>경영안정자금</sup> 및 완료보고서<sup>시설자금</sup> 제출 시, 대출실행일 이후 지출내역 만 인정(대출실행일 이전 지출 건 소급 적용 불가)
- 자금의 「용도 외 사용」금지(상세내용은 이차보전 중단(환수) 동의서 참조)

- ✓ 임대(유·무상 무관), 지원용도 무단변경, 목적 외 사용(투기, 개인소비)  
→ 중단 및 환수, 향후 3년간 시 자금 사용 제한
- ✓ 지원시설의 공실(100% 공실 혹은 사업 영위하지 않을 경우) → 중단

## 마. 신청서류 (기업 → 협약은행 제출)

- 신청서 1부(별지 제1호 서식)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 1부
-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복지원 사실 확인서 1부
- 이차보전 중단(환수) 동의서 1부
- (경영안정자금) 사업계획서 1부
- (시설자금) 시설설비 투자계획서 1부
- 최근연도 결산 재무제표 1부
- 최근연도 부가가치세 표준 증명원 1부
-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
- 법인등기부 등본 1부(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)

### 【추가서류】 - 해당업체에 한함

- 특례지원 대상 확인서류

#### (원전산업 관련 협력기업 관련 증빙서류)

- ✓ 한수원 유자격등록증 또는 원자력품질보증(KEPIC) 자격 인증서
- ✓ 원전산업 원청 확인기업(개별인증 서류 제출)

#### (방산업체 및 방산 부품 생산(납품)기업 관련 증빙서류)

- ✓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기업
- ✓ 납품실적확인서(군 관련 기관, 체계기업 등) 발급 기업
- ✓ 방산부품개발 참여실적서(창원산업진흥원, 국기연, 경남테크노파크 등) 발급 기업

(철강·알루미늄·구리 제품 제조기업 및 관련 파생상품 제조기업  
관련 증빙서류)

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아래 분류코드 기재된 주업종코드확인서

✓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제조업 (분류번호 C)

24. 1차 금속 제조업

25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외)

26. 전자 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

27. 의료, 정밀,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

28. 전기장비 제조업

29.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

30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

31.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

② 수출신고필증, 구매확인서, 품목분류확인서 등 아래의 HS코드가  
명시된 증명서

✓ 철강(72, 73), 알루미늄(76), 구리(74)

③ 제품 함량 분석서 등 제품 내 철강·알루미늄·구리 함량을  
분석해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

○ (소프트웨어산업)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관리확인서

○ (제조관련서비스업) 개별허가서류

○ 공장 신축 및 증·개축의 경우

- ✓ 공장 신설승인서(창업사업계획승인서) 1부
- ✓ 건축허가(신고)서 1부
- ✓ 건축계약서 및 설계내역서(평면도 포함) 각 1부

○ 공장 매입의 경우

- ✓ 매매계약서 1부
- ✓ 입주계약서(국가산업단지, 일반산업단지, 자유무역지역) 또는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」에 의한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제조시설설치승인서

○ 기계설비 구입일 경우

- ✓ 계약서(외국산일 경우 오퍼시트 1부)
- ✓ 신청 시설의 카달로그 또는 설계도면 1부

**바. 문의처 : 창원시 지역경제과 (055-225-3215, 3216)**

## 2. 자금별 지원계획

### 가. 경영안정자금 : 1,600억 원(연중)

- 지원대상 : 공통사항 대상업체와 아래에 해당하는 업체
  -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에 따른 사회적기업
  - 「협동조합 기본법」에 따른 협동조합
  -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
  - 공장미등록 제조업체 중 공장건축면적이 500㎡ 미만이고,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‘공장 또는 제조업소’인 사업자등록을 필한 기업 (단, 기존 등록된 공장의 일부를 임차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장등록을 하여야 함)
- 지원제외대상 : 공통사항 대상업체와 아래에 해당하는 업체
  - 결산재무제표 상 제조전업률<sup>1)</sup> 30% 미만 업체(제조업체에 적용)
- 대출한도
  - 최근연도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의 1/2 범위 내에서 적용
  - 시설자금과 합산 5억 원(특례 10억 원) 초과할 수 없음
  - 대표자 동일한 경우 합산

한 도 액	대 상
5억 원	- 특례대상 기업
3억 원	- 공장등록 제조업체
1억 원	- 소프트웨어산업체 - 제조관련서비스업(3종) - 창업기업 - 로봇, AI, 빅데이터 등 4차산업 관련 연구개발업 - 사회적기업, 중소기업협동조합 - 공장미등록 제조업체

1) 제조전업률 : 손익계산서 상 제품매출액(제품수출액 포함) / 총매출액

○ 자금용도 : **대환용도 사용 가능(정책자금 제외)\***

- 신제품, 신기술개발, 생산성향상, 품질개선 등 자체 연구개발 소요 자금
- 수출 촉진에 소요되는 자금
- 해외유명규격인증 획득 및 유지에 소요되는 자금
- 원·부자재 구입비, 노임 지불 대금
- 기타 중소기업 운영 전반에 소요되는 일반 운전자금

**\* 정부나 지자체 등 정책자금을 적용한 대출에 대해서는 대환이 불가하나, 한국은행 중소기업지원자금이 지원된 C1, C2 대출자금에 대해서는 대환이 가능**

**나. 시설자금 : 400억 원(연중)**

○ 지원대상 : 아래에 해당하는 업체

- 국가산업단지, 일반산업단지, 자유무역지역 입주계약 체결업체
-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」에 의한 공장설립 승인업체 또는 제조시설설치 승인업체
-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에 의한 공장 설립계획 승인업체
- 건축물 신축(증축)시 공장설립(증설) 승인 또는 제조시설면적이 500㎡ 미만인 경우 건축허가를 득한 업체

○ 지원제외대상 : 공통사항 대상업체와 아래에 해당하는 업체

- 결산재무제표 상 제조전업률<sup>2)</sup> 30% 미만 업체(제조업체에 적용)

2) 제조전업률 : 손익계산서 상 제품매출액(제품수출액 포함) / 총매출액

○ 대출한도

- 최근연도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의 1/2 범위 내에서 적용
- 경영안정자금과 합산 5억 원(특례 10억 원) 초과할 수 없음
- 대표자 동일한 경우 합산

한도액	대상
10억 원	- 특례대상 기업
5억 원	- 공장등록 제조업체
2억 원	- 소프트웨어산업체 - 제조관련서비스업(3종) - 창업기업 - 로봇, AI, 빅데이터 등 4차산업 관련 연구개발업

○ 자금용도

- 기존 생산시설의 자동화에 소요되는 자금
- 생산성 향상, 시험·검사·분석, 정보화, 기술 개발 추진에 필요한 기계·장치 구입 소요자금(중고기계 포함)
- 공장의 신축·증축·매입에 소요되는 자금

※ 공장 신축, 증축, 매입 시 사업 완료 후 공장등록 必

[별지 제1호서식]

#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긴급 용자 지원 신청서

## 업 체 현 황

상 호		사업자등록번호	-	-
대 표 자		생년월일(성별)		(남, 여)
전 화 번 호	( )	회신용 이메일		
주 소	※ 도로명주소 기재	종 업 원 수		명
업 종		중 목		
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여부		(0, x)	은행	지점장(인)
기 업 유 형	일반중소기업, 최고 경영인·노동자 상, 산업평화상, 최고연구팀상 수상기업, 일자리창출 우수기업, 창원시 기업의날 지정·운영업체, 이노비즈기업, 벤처기업, 소재부품전문기업, 수출유망중소기업, 신기술·신제품 인증기업, 창원형 강소기업, 여성기업, 장애인기업, 조선사 협력업체, 가족친화인증기업, 항공·원전산업 관련 협력사, 방산업체 및 방산 부품 생산(납품)기업, 철강·알루미늄·구리 제품 및 동종 파생상품 관련 품목 제조기업,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신청 업체			

※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여부를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
**신 청 내 역** \* 상환방식(선택) : 2년거치 일시상환( ), 2년거치 1년 분기별 균등상환( )

신 청	경영안정자금	원(부)자재 구입				백만원	취급 은행
		인건비				백만원	
		백만원	각종 기자재 및 소모품 구입			백만원	
			기타(세부사항 구체적 기재)			백만원	
금 액	시 설 자 금	시 설 명	규격	수량	계약자(매도자)	소요금액	은행 지점장(인) ■ 담당자명 : ■ 전화번호 : ■ 회신이메일 : ※ 경남도내 지점에 한함
						백만원	
						백만원	
						백만원	

※ 시설내역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**심 사 내 역** (창원시 담당자 기재사항입니다)

구 분	금 액	구 분	검 토 결 과
매 출 액	백만원	시자금 대출현황	지방세체납
자 본 금	백만원	신청제한 대상	해당유( ) 해당무( )
자본총액	백만원	대출 한도액	억원
부채총액	백만원	한도초과여부	적( ) 부( )
자산총액	백만원	지원대상업종	이차보전 %
제품대출액	백만원	자금사용목적	적( ) 부( )
		사업장 확인	확인자 (인)

창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용자 지원을 받고자 불임과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 신청인(대표자)

인

## 창 원 시 장 귀 하

구 분	구 비 서 류
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자금 (공통사항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최근연도 결산 재무제표 원본 1부</li> <li>○ 당해연도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1부</li> <li>○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1부(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것)</li> <li>○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</li> <li>○ 특례지원 대상기업 확인서류(해당자에 한함)</li> </ul>
시설자금 (추가사항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장 신축 및 증축일 경우 : 건축허가서 및 건축계약서, 설계내역서 각 1부</li> <li>○ 유희공장 매입일 경우 : 매매계약서 및 입주계약서(또는 공장 설립승인서류) 1부</li> <li>○ 신규시설 구입일 경우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계약서(외국산일 경우 오퍼시트 1부) 및 신청시설의 카달로그 또는 설계도면 1부</li> </ul> </li> <li>○ 시설설비 투자계획서(별첨)</li> </ul>

#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
## 1.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에 관한 동의

- 수집 · 이용 목적
  - 창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 접수, 지원 결정, 사후관리 및 정책수립
- 수집 · 이용 정보
  - 개인식별정보(업체명 · 사업자등록번호 · 대표자 성명 · 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 · 사업장 소재지 · 전화번호 등 연락처) 등
  - 재무상황(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 등)
  - 개인식별정보 외에 신청서 등에 기재된 정보 및 업체가 제공한 정보
- 보유 및 이용기간 : 5년
- 개인정보의 수집 · 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동의를 거부할 경우 창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을 받을 수 없음

위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동의하십니까?  동의  동의하지 않음

## 2.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

- 제공받는자 : 협약 금융기관
-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: 중복지원 여부 확인
- 제공항목
  - 개인식별정보(업체명 · 사업자등록번호 · 대표자 성명 · 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 등)
- 제공기간 : 5년
-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동의를 거부할 경우 창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을 받을 수 없음

위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?  동의  동의하지 않음
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대표자 성명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서명 또는 날인)

※ 창원시 경영안정자금 지원조건 선호도 조사(선호 대출조건 체크)

2년거치 일시상환

2년거치 1년 분기별 균등상환



# 창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중단(환수) 동의서

## □ 사후관리 개요

- 실시시기 : 분기별 1회(연4회)
- 실시방법 : 서면조사 및 현장실사
- 조사대상 : 용자승인 업체 중 대출실행 업체
- 조사내용 : 자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, 휴·폐업, 타시군 이전, 신고사항 미이행 여부 등
- 기업협조 : 지원대상시설 현장 안내 및 관련 서류 제출
- 조치계획 : **용도 외 사용한 기업의 경우 소명기회 부여 후, 미소명 시 대출 은행을 통해 이차보전금 중단 또는 환수 조치하며, 향후 3년간 시자금 사용 제한**

## □ 이차보전 중단 등 조치

- 중단 및 환수, 향후 3년간 시자금 사용 제한 : **임대(유·무상 여부와 무관), 목적 외 사용**
- 중단 : 휴·폐업 기업, 타시군 이전, 상환기간 내 매매, 공장 이전 후 미등록, 지원시설의 공실(100% 공실이거나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경우)

## □ 시설물 용도 외 사용 제한기준

- 지원된 「건축물 임대비율」이 「기업자부담비율\*」이내의 경우 지원 유지, 초과 시 중단 등 조치
- 기업이 원금 상환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시자금 차지비중이 감소되는 만큼 해당 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는 여력 인정
- \* 건축물 임대비율 = [임대면적 ÷ 건물 총연면적] × 100
- \*\* 기업자부담 비율 = 1-[시자금 대출 잔액(임대시점)/지원시설가액(지원시점)] × 100

### < 예 시 >

시설가액 10억원인 공장 매입(총연면적 1,000㎡)을 위해 8억을 지원받은 기업이 해당 공장을 부분임대(임대면적 210㎡) 하고 있는 경우(남아있는 시자금 대출잔액 8억원)

▶ 기업자부담비율(20%) = [1 - (시자금 대출잔액 8억원 ÷ 시설가액 10억원)] × 100

▶ 건축물임대비율(21%) = [임대면적 210㎡ ÷ 건물 총연면적 1,000㎡] × 100

⇒ **건축물 임대비율이 기업자부담비율을 초과하여 이차보전 중단 및 환수**

## 이차보전 중단 및 지원된 이자 환수

상기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**이차보전 중단 또는 지원된 이자가 환수될** 것이며, **향후 3년간 창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용이 제한될** 수 있습니다.

본인은 위의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였으며, 자금의 상환 기간 전이라도 귀 청에서 자금승인 취소 및 이차보전 중단·환수할 경우 이의가 없으며 이에 따를 것을 약속합니다.
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확인자    업체명

대표자

(인) 또는 서명

**창 원 시 장**    귀하



※ 시설자금 신청용

# 시설설비 투자계획서

## 1. 소요자금 및 조달 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총 소요자금	시 용자신청	기타자금	자부담
소 계				
건 축				
기계 설비				
공장 매입				

## 2. 신규 시설계획

### □ 건 축

건축의 종류	신축( ) 증축( ) 개축( )		
건축물의 용도			
위 치			
건축면적(m <sup>2</sup> )		연 면 적(m <sup>2</sup> )	
건축허가(신고)일		준 공 예 정 일	
시 공 업 체		계 약 일	
소 요 자 금	백만원	용자신청금액	백만원
구 비 서 류	1. 공장설립승인서, 건축허가서 사본 1부 2. 건축계약서 사본 1부, 3. 건축설계내역서(평면도 포함) 1부		

### □ 기계설비

(단위 : 백만원)

연번	시 설 명	규 격 (모델명)	수량	단가	소요금액	구입처	완료 예정일
	계						

※ 구비서류 : 매매계약서 및 제품 카탈로그 또는 제작내역서 1부.

### □ 공장 매입

(단위 : 백만원)

공장등록 업체명 (매입공장)	소재지	시설명	면적(m <sup>2</sup> )	매입금액	매도자	완료예정일
산업단지입주 계약체결일	공장설립승인일 (제조시설설치 승인일)	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(1년 미만)	임대공장등록일 (매수자 운영공장)	타시군에서 창원시로 이전일		

※ 구비서류 : 매매계약서 및 입주계약서(또는 공장 설립승인서, 제조시설설치승인서)

**창 원 시 장** 귀하

※ 경영안정자금 결과 보고용

## 중소기업 육성자금(경영안정자금) 사용내역서

### 1. 용자 현황

업 체 명		대표자	성 명 :
사업자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		생년월일 :
용자 금액	백만원	용자실행일	20 . . .
자금종류	경영안정자금	협약은행	은행 지점

### 2. 자금사용 내역

(단위: 백만원)

사용용도	사용금액	증빙서류	비고(지출상세)
계		ex) 세금계산서, 영수증	사업계획서 상 작성내용
원(부)자재 구입			
기자재 및 소모품 구입			
인건비			
기타			

년 월 일

업 체 명(대표자) : (인)

창원시장 귀하





## 참고 1 특례지원 대상기업(22개)

- 창원시 기업의 날 지정 · 운영 기업
- 창원시 최고 경영인 · 노동자 상, 산업평화상, 최고연구팀상 수상 기업
-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상 수상 기업
- 무역의 날 및 상공의 날 등에 수여하는 대통령표창 이상을 받은 기업
- 「창원시 환경경영 기업대상 조례」 따른 환경경영 기업대상을 수상한 기업
- 「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
-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
- 「소재 · 부품 ·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14조제2항에 따른 소재 · 부품 · 장비 전문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
-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수출유망 중소기업
- 정부의 세계일류상품생산 선정기업 또는 신기술(NET) · 신제품(NEP) 인증 기업
- 창원형 강소기업
- 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
- 「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」에 따른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
- 조선사 협력업체(조선사 사내협력업체 및 조선기자재 업체)
- 배출시설설치제한구역 내 개별입지에서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기업
- 「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가족친화인증기업
- 항공 제조업체(항공업 엔진 · 부품제조업 및 관련 협력 업체)
- 원전산업 관련 협력사(유통 · 건설 · 운수 등 원전기업 인증 업체)
-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7조제6항제1호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기업
- 방산업체 및 방산 부품 생산(납품)기업
- 철강 · 알루미늄 · 구리 제품 제조기업 및 관련 파생상품 제조기업
-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신청 업체

## 참고 2 4차산업 기반의 주요 업종 분류표

□ 업종 지원 예시

구분	세부 내용	분류 코드	산업분류명
빅 데이터	컴퓨터 프로그래밍	62010	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
	컴퓨터 시스템 구축	62021	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
	빅데이터 처리	63111	자료처리업
	온라인 정보제공	63991	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
로봇	물리학 연구	70111	물리, 화학 및 생물학 연구 개발업
	기계공학 연구	70129	기타 공학 연구 개발업
인공지능	머신러닝 SW	58222	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블록체인	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	63120	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
가상현실	유선 정보 송수신	61210	유선통신업
	무선 정보 송수신	61220	무선통신업
	VR 콘텐츠	58219	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핀테크	전기·전자 연구개발	70121	전기·전자공학 연구 개발업

※ 한국표준산업분류 11차 개정 참조(통계청 통계분류포털)